

제4기  
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 
분야별 제도개선  
건의 현황 ('21~'23)

- 디지털서비스 분야 -



# CONTENTS



##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('21~'23)

※ 해당 자료는 '21~'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, '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

### ■ 디지털서비스 분야 (8건)

-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명확화
-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(CSAP)의 상위레벨 신설
- 전자서명인정사업자 평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
-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기간 연장
-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
- 메타버스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
- 특수교육 교원 종류에 ICT 전문교사의 자격 추가
- 초·중·고 가상현실(VR)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정 방안 마련

#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명확화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신속한 계약 체결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,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계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

## 건의결과



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사업특성 및 수요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에 서비스 품질·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한 기본제안서를 포함하고, '적격'인 경우 즉시 협상

- ①, 제안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안요청
- ②,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개선

## 개선/파급효과



\*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(조달청고시) 개정 예정(~'23)

소관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/조달청

- 계약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기관의 행정부담 완화
-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활성화에 따른 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대



#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(CSAP)의 상위레벨 신설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(CSAP)는 국가·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,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제한으로 CSAP 인증제도의 실효성 저하

## 건의결과



중앙부처 및 지자체 내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행안부, 국정원 소관으로 민간 클라우드 공공 이용 확대와 이를 위한 보안인증 상위레벨 신설 방안 등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

\* 행정·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(~'23)

소관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# 전자서명인정사업자 평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개정 전자서명법 기준으로 전자서명인정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민간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나 매년 전자서명인정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관 평가료 공시 기준 매년 1억3천~7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함

## 건의결과



현재 평가 신청 시 평가기관과 사업자 간 충분한 계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금융보안원의 경우 평가 신청 시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일부 조정 가능함을 유권해석(21.8)

\* 전자서명법

소관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/방송통신위원회

#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기간 연장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경우, 해당분야에서 오랜 기간(10년 이상)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과중

## 건의결과



유사·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,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,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 등을 통해, 기간단축 및 인증 비용절감

\*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(21.3)

소관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## 개선/파급효과



- 인증 비용 최대 50% 절감 예상 및 인증 취득기간 약 34% 단축 예상  
- 관련 업무, 비용 부담 완화로 정보보호 R&D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

#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정 정의 및 관련 기준이 없어,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물로 정의되고 메타버스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,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 발생

## 건의결과



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'메타버스'와 '일반적인 게임물'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

\* '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' 마련 추진 예정('23. 上)  
\*\*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('23)

소관부처: 문화체육관광부



# 메타버스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메타버스 특성상 현실의 데이터 기반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활용 수요가 다수 있으나,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·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,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 발생

## 건의결과



메타버스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
\* '메타버스·NFT 저작권 쟁점 연구' 수행('22. 11)

소관부처: 문화체육관광부

\* '올바른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' 수행(~'23. 9)

\* 메타버스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(~'23. 下)

## 개선/파급효과



- 메타버스 저작권, 상표권 등에 대한 법적인 이슈 선제적 대응 가능
- 메타버스 저작권·상표권 관련 소송 발생 정도 감소에 따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
- 메타버스 저작물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독창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관련 신시장 창출



# 특수교육 교원 종류에 ICT 전문교사의 자격 추가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이 별도로 시행 중이나,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"ICT 전문인력"에 대한 규정이 없음

## 건의결과



교원 이외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 또한 초·중등교육법 제22조(산학겸임교사) 및 동법시행령 제42조(산학겸임교사 등)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

\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,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

소관부처: 문화체육관광부



# 초·중·고 가상현실(VR)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정 방안 마련

디지털서비스 분야

## 애로내용

초·중·고 진로체험의 경우 가상현실(VR)기반 체험과 견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,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

## 건의결과



진로교육법 제2조는 특정 형태의 진로 체험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, 법령에서는 향후 사회·교육 환경 변화 등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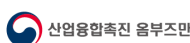
\* 진로교육법 제1조, 제2조

소관부처: 교육부

## 개선/파급효과



- 공교육 현장에 학생건강검사 결과 데이터(키, 몸무게)를 활용한 AI 기반 교육 서비스 도입 활성화



※ (참고)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서는  
융합·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·애로 해소를 지원하고,  
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 
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위 내용 관련하여  
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,  
"1670-9050" / "hyelim0507@kitech.re.kr"으로 문의  
또는 <https://www.oico.kr/>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